

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[]지정
[]변경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5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	

지정 (변경) 내용	시설	
	장비	
	인력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] 제14조의9제1항
[] 제14조의10제1항 에 따라

위와 같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[] 지정
[]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지정신청의 경우 가.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.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(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, 시험·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·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) 1부 다.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(1) 업무수행 절차·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(2) 시설 및 장비의 유지·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2.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가.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원본 나.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. 국가기술자격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처리기관 (국립환경과학원)	→	검토 (서류 및 현장) 처리기관 (국립환경과학원)	→	결재 처리기관 (국립환경과학원)	→	지정서 교부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